

서울특별시 이동안전체험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24
----------	------

2017년 8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17년 8월 16일
- 상정일자 :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 8월 30일 상정의결 (원안 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 이동안전체험교실은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이 필요한 위탁사무로서
- 전문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이동안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민간위탁 추진 개요 및 경위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오는 '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¹⁾ 제2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해 민간위탁 지속여부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 및 초등학생 저학년 등을 대상으로 해당분야의 전문 강사를 통하여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임.

-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의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7.13.]

2.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연혁 및 운영현황

-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 사업은 「아동복지법」(제4조 및 제31조)과 서울시 『어린이들이 안전한 서울만들기 종합계획』(시장방침 제384호)에 따라 2002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임.
- 동 사업은,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아동(6세-9세 대상)에게 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험형 안전교육 시설을 겸비한 차량(교육용 5톤 차량 2대, 대형버스 1대)을 갖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을 찾아가 교육을 실시하는 순수 시비사업(2017년 기준 사업비는 2억 5,958만원)임.
- 동 사업 운영은 처음 시행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해 왔고, 2017년 현재 재단법인 한국어린이안전재단(대표 고석)에서 위탁 운영 중 임.

<이동안전 체험교실 사업추진 연혁>

- 어린이들이 안전한 서울만들기 종합계획(시장방침 제384호, '01.4.11)
- (사) 한국안전생활교육회 최초 위탁 : 2002. 5. ~
- (재)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사무 위탁 : 2008. 3. ~ 현재
 - 2008. 3. ~ 2010. 3. (2년)
 - 2010. 3. ~ 2012. 3. (2년)
 - 2012. 3. ~ 2014. 12. (2년10개월)
 - 2015. 1. ~ 2017.12. (3년)

- 동 사무의 민간위탁기간은 오는 2017년 12월말로 만료될 예정으로, 기존과 같이 민간에 위탁(재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동의를 거쳐야 하는바²⁾, 본 동의안은 이의 절차를 이행하게 위해 제출된 것임.

○ 참고로, 서울시에서 제출한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은 다음 <표>와 같음.

<최근 3년간,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 주요 실적>

구분	교육기관	인원(명)	비고
2014	가명유치원 외 176기관	56,115	튼튼쑥쑥박람회 개최
2015	영등포초등학교 외 161기관	26,585	메르스로 인해 박람회 등 단체 행사 미시행
2016	한사랑 지역아동센터 외 159기관	45,660	어린이 안전짱 박람회 등 개최

2) 지난 2017년 6월 29일 개정(시행일 2017년 7월 13일)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매 4회차에 의회동의를 받도록 한 주기를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아울러 이상의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성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3.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이 요청됨.

- 이런 점에서,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려는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 사무의 경우, 아동의 안전대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체험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관련분야의 고도의 전문 기술적인 사무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특별한 문제는 초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이는 현행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기준이 적합한지와 동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내용으로 적합여부를 판단해 볼 때도, 상기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한편,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 사무는 재난재해 관련 안전 교육 뿐만 아니라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초등학교 이하 연령대 아동 대상의 심층적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 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할 것임.

4. 종합의견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 사무는 민

간위탁 사무로서의 법적 요건 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해당분야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고 전문적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행정사무의 효과성과 재정효율성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이동안전체험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4
----------	------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이동안전체험교실은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이 필요한 위탁사무로서
- 나. 전문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이동안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
- 위탁기간 : 3년(2018.1.1. ~ 2020.12.31.)
- 수탁기간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259,582천원(2017년 예산기준)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아동복지법 제31조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사무 :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복지시설들의 아동에게 전문강사의 지도하에 화재·지진 등 재난대비 안전,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통안전 등에 대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 교육내용에 대한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 사업의 홍보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 제31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어린이들이 안전한 서울만들기 종합계획』 (시장방침 제384호)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이동안전 체험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연령대 아동(6세~9세)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동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며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의 홍보 및 사업추진관련 학교 및 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업능력이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31조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호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④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18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가족담당관 아동친화도시팀 김미연(☎ 2133-5182)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 성과보고서

□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 제31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어린이들이 안전한 서울만들기 종합계획」 (시장방침 제384호)

○ 추진경과

- 어린이들이 안전한 서울만들기 종합계획(시장방침 제384호, '01.4.11)
- (사) 한국안전생활교육회 최초 위탁 : 2002. 5. ~
- (재)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사무 위탁 : 2008. 3. ~ 현재
 - 2008. 3. ~ 2010. 3. (2년)
 - 2010. 3. ~ 2012. 3. (2년)
 - 2012. 3. ~ 2014. 12. (2년10개월)
 - 2015. 1. ~ 2017.12. (3년)

○ 사업내용

- 위탁사무 :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복지시설들의 아동에게 전문강사의 지도하에 화재·지진 등 재난대비 안전,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통안전 등에 대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 ▶ 교육내용에 대한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 사업의 홍보

○ 사업현황

구분	사업예산 (천원)	운영현황		비고
		교육기관	인원(명)	
2015	238,030	영등포초등학교 외 161기관	26,585	메르스로 인해 박람회 미개최
2016	253,033	한사랑지역아동센터 외 159기관	45,660	-
2017	409,582	메꽃어린이집 외 96 기관 (7월말 현재)	19,263	교육차량 교체

□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 사업목표

- 가정, 교통, 신변, 학교안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스스로 안전대처능력을 체험을 통해 습득하고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조성

○ 추진실적

- 연도별 목표(계획) 대비 실적

구분	목표 (교육인원)	실적	목표대비 달성률	비고
2014	50,000	56,115	100%	
2015	50,000	26,585	53.1%	불가피한 외부요인(메르스) 으로 달성률 저조
2016	50,000	45,660	91.3%	

- 연도별 만족도조사 결과

- 이동안전체험교실에 참여한 초등학생 및 교사

구분	대상	인원	평가항목	만족도	비고
2014	교사	145	- 교육만족도 - 안전의식 변화 - 유익한 프로그램 등	매우만족 83% 만족 15%	유아만족도 (326명)는 그림으로 만족도 표현
	학생	5,421	- 교육만족도 - 재미있었던 안전 교육내용 등	매우만족 83% 만족 15%	
2015	교사	152	- 교육만족도 - 안전의식 변화 - 유익한 프로그램 등	매우만족 81.6% 만족 28%	유아만족도 그림으로 만족도 표현
	학생	1,318	- 교육만족도 - 재미있었던 안전 교육내용 등	매우만족 84% 만족 13%	
2016	교사	87	- 교육만족도 - 안전의식 변화 - 유익한 프로그램 등	매우만족 55% 만족 20% 보통 12%	유아만족도는 그림으로 만족도 표현
	학생	3,130	- 교육만족도 - 재미있었던 안전 교육내용 등	매우만족 81% 만족 15%	

- 연도별 예산 대비 집행 및 정산 실적

구분	사업예산 (천원)	집행	잔액	비고
2015	238,030	238,030	-	
2016	253,033	253,033	-	
2017	409,582	350,500	59,082	2017.7월말 현재

□ 민간위탁사업 향후계획

○ 성과평가 결과 요약

- 주요성과 : 교사, 아동용 교육만족도 설문에 따르면 교육만족도는 80%이상의 높은 만족률을 보이며, 단순히 아동의 호기심 자극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교육을 통해 안전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이것이 일상생활에서의 행동변화로 이어짐
- 보완과제 : 안전교육이 일회성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심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개선(발전)방안

- 향후계획 : 노후화된 교육차량을 교체하여 10월부터 운영·교육예정